

부산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2나54115(본소), 2022나54122(반소) 판결

[철거청구 · 소유권이전등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내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민태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충희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양진

변 론 종 결 2023. 4. 5.

판 결 선 고 2023. 5. 3.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6. 14. 선고 2020가단348457(본소), 2021가단 336567(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5, 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붕 4.5㎡를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하라.

나. 반소 :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5, 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5㎡의 1/2 지분 중, 피고 B에게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에게 2/3 지분에 관하여 각 2005. 12. 31. 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5, 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붕 4.5㎡를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하라.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우중, 판사 위은숙, 판사 신승아

별지

부동산의 표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D 대 127.6㎡. 끝.

별지

도면의 표시

토지소재	부산광역시 연제구			
------	--------------------------------	--	--	--

지번	부호	면적(㎡)	설명	비고
대	가	123.1	1,5,6,3,4,1 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면고
	나	4.5	2,6,5,2 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폐고
계		127.6		

